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2021/10/27 통권 1542호

CEO·CFO·COO · 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必需品** 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의원장

사업하기 불편한 나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중 회계사:
중소기업 창업자를 위한 회계부정, 공공유용예방방법 10계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대물변제 받은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보다 큰 경우 채권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지정감사인의 감사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
- IFRS 실무서 '경영진실명서' 공개초안
-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분공시 위반 유형을 유의하세요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라도 각 지점에서 분양업무 총괄하는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는 지점 명의로 발급함이 원칙임 (p.13)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 Private accounting과 Public accounting의 유사점·차이점 비교 >

개념 구분	Private Accounting(사적 내부회계)	Public Accounting(공적 외부감사)
정의 범위	기업 내부회계, internal accounting	외부감사, external audit
주요 역할	회사 거래 분석과 재무제표작성	피감사 재무제표의 외부감사
적합적성	구체화, 정확성, 충성심, 창의성	포괄성, 소통능력, 독립성, 준수성
필요 재능	회사 내의 여러 부서 문제파악, 소통능력	다종다양한 고객과의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관리능력
담당 회사	특정 1개 회사의 자체 회계정리	여러 회사의 외부감사인 역할
자격종류	AT(Accounting Technician), 재경관리사, 전산회계·세무 자격, 원가관리사 등	공인회계사(외부감사인), 외국공인회계사(외국기업감사)
개인 경력	특정 계정 → 전반계정 → 자금관리 → CFO → COO → CEO 등	회계감사 + 세무자문 + 재무경영컨설팅(Associate → mgr → partner)
법인 현황	중소형 회계법인, 상장감사인 비등록(기장대리, 세금신고, 재무제표 작성자문)	대형 회계법인, B4, 상장감사인 등록(외부감사와 독립성 문제 없는 업무)
현실 약점	회사내 기피부서(최종 공정이면서 모든부서 갈등 연결)	연중 상반기 3-4개월에 업무 집중
향후 전망	내부회계 입력, 재무제표 작성은 AI로 급격 대체	외부감사 일부 기능은 AI로 + ESG로 발전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542호 / 주간 43호

2021. 10. 27. (수)

· 발행인: 이윤선
· 제작: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FAX: (02) 718-8565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Private accounting과 Public accounting의 유사점·차이점 비교	표지
긴급 시사해설	중소기업 창업자를 위한 회계부정, 공공유용예방법 10계	2
CEO에세이	사업하기 불편한 나라	4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무슨고민할까?)	- 농산물건조기 부가세 사후환급 관련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문의 - 타업체를 통해 상품권 구입 시 부가세 과세여부 - 계약의 변경	6 7
눈에 맞는 절세미인	대물변제 받은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보다 큰 경우 채권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8
매일 절세 재무요점	- 법인세 최고세율 추이 - 일시적 2주택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10 11
직장인 Survival	꿈을 현실로 만드는 7가지 포인트	12
최신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이 근린생활시설등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세무계산서는 재화를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발급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1217, 2021.01.2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서면법령부가-4909, 2021.03.02)	13 14
세정뉴스와 해설	'상속세제 개편' 文정부 임기내 이뤄지나... 정부 내달 검토 착수키로	15
마케팅 Tax consulting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라도 각 지점에서 분양업무 총괄하는 경우, 매출세무계산서는 지점 명의로 발급함이 원칙임	13
세무정보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16
회계정보	- 지정감사인인 감사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 - IFRS 실무서 '경영진실명서' 공개초안 -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분공시 위반 유형을 유의하세요	23 34 45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를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44

중소기업 창업자를 위한 회계부정,公款유용예방방법 10계



박윤종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기업승계·증여·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829-7575)

1. 소액 지출관리 통장과 거액 매출입금통장 등의 별도 분리운영
평소 사용하는 일주일이나 15일분 평균 소액지출 사용금액(약 50~100만원)은, 소액자금 통장으로 출납경리직원이 별도 관리함(별도 OTP)
2. 자금·자산관리 담당자와 회계처리 담당자는 다른 인력
 - ① 자금담당자가 대표 결재받아 송금·지출 후
 - ② 증빙을 입수 전달하면 회계담당자가 회계처리 기록함.
3. 재무상대표의 현금예금, 매출채권, 재고자산과 매출, 순이익의 변동상황점검
대부분 매출이익 증감과 현금예금증감이 비례하지만, 특별 변동시 다른 직간접 연관계정 증감으로 설명되는지 파악함.
4. 예금통장, 법인카드, 출금인감, 인증서 등은 서로 다른 담당자가 관리
출금 위한 통장, 도장, 비밀번호, OTP 등 별도 번호가 동일인에게 집중되거나 모두 알지 못하도록 함.
5. 현금, 예금 담당자와 경리담당자의 불시휴가와 시재액 정밀실사
가장 민감한 문제이므로 적절한 대응책과 인권보호상황 구비함.
6. 관리분야(자산, 예금, 경리, 회계)인력의 정기적 순환
특정 재산관리와 회계관리업무를, 한 담당자가 오랜 기간 수행할 수 없도록 순환 보직과 전환배치

7. 매월말, 분기말, 반기말, 연말 회계처리내용 상세분석
일시거액의 지출, 계정대체, 수정분개 내용의 이유와 원인 · 결과의 파악
8. 회사 명의 휴면 은행계좌는 신속 폐쇄
장부 이외 거래의 업무무관 이용목적 방지
9. 계속고정거래처와의 수입 · 지출 변동과 관련 증빙사항 점검
10. 자금, 경리, 회계 담당자의 오류 · 부정 관련 손해보험 가입 등

사업하기 불편한 나라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krhee@hotmail.com

제프리 존스 주한 미(美)상공회의소 전 회장이 유창한 한국말로 토해 냈다.

"한 미국친구가 미국에서 사업하기가 불편하다고 말해 한국에서 사업해보면 진짜 불편한 게 뭔지 실감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대기업 회장 상당수가 뇌물사건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미국에 들어가지 못할 처지가 되자 이들 비자 때문에 미대사관에 부탁하는 게 일이 됐다."

미국과 한국을 소상하게 비교할 수 있는 그가 하는 말이어서 놀랄 일은 아니었다.

한 기업의 사장이 일간지에 국제청장과 재경원장관은 기업을 괴롭히지 말라는 광고를 내는 일이 있었다. 이 사장은 정치인과 관리와 세리의 괴롭힘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서 기업 문을 닫겠다고 절규했다. 사실 부패한 정치인과 공무원을 추방하고 수많은 비합리적 규제를 철폐하고 보다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풍토가 하루 빨리 정착되어야 한다. 이사장의 말대로 "약하고 덜 배운 백성의 기름을 짜고 피를 빨아 부패한 정치권, 고급관료, 재벌을 보호하고 살찌우게 하며 엄청난 치부를 해왔음을 반성해야 한다." 오죽하면 이런 절규가 나오겠는가.

그래서 지속적인 기업의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기업 환경개선이 시급하다. 기업의 활동이 왕성해야 나라가 번영한다.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가 바로 안심하고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이다.

물론 묵묵히 정직하게 고생하는 공직자들도 많다. 하지만 떡구름같은 금융비리 뉴스는 오래전부터 언론에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또 구질구질하게 은행원들의 시중을 들어주면서 은행돈을 빌리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 면에서 사채가 낫다는 한국의 실정을 반영하는 기업인의 실토도 기막히다.

필자의 대학친구이며 여성의류 중소기업자를 경영하는 한 기업가의 탄식이다. 수출의 경우와 달리 내수시장에서는 '무자료거래'가 대부분이다. 그가 혼자 아무리 자료를 발생시켜

뒤편한 경영을 하고자 해도 역부족이다. 내수시장을 포기하든지 기존 관행을 따르던가 둘 중의 하나였다. 그러다가 어느 날 들이닥친 세리에게 억울하게도 거액의 탈세추징금을 뒤집어쓰게 됐다. 창업 5, 6년만에 올 것이 온 것이었다. 막대한 탈세추징금을 내고 사업을 접든지 또는 세리와 협상(?)하면서 사업을 계속하든지의 선택이었다. 양식과 원칙을 지키고 싶었던 그였지만 선택은 물어 보나마나 였다.

사실 따지고 보자면 어디 공직자와 세리와 금융권뿐이라. 기업 내부에서도 바르고 성한 구석이 없는 것 같다.

주한외국기업의 CEO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성금, 급행료와 뇌물이나 향응 같은 각종 준조세와 강경한 노조활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준조세를 요구해 온 기관으로는 민간단체, 협회, 언론매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있다

그들이 지적한 '현재 한국 비즈니스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정부의 각종 규제와 준조세, 강경노조 등 노사문제, 기업과 금융의 회계 투명성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경제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기업과 금융구조조정과 체질 개선, 관료의 구시대적 사고와 행동변화, 노사분규와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 등이 많이 꼽혔다.

아무튼 기업활동이 활성화되려면 기업 자신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만연한 불투명과 부조리를 하루빨리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꿈수와 편법 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나야 한다.

농산물건조기 부가세 사후환급 관련

Q 농기계 납품업체인 신흥기업(주)입니다.
7/1일 부터 농산물건조기 사후환급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저희 대리점에서 사후환급 대상자(농협 및 수협)을 통해 부가세 사후환급을 신청하려고 하니, 카드영수증을 증빙첨부서류로 인정할수없으니
세금계산서를 가져오라 합니다. 궁금한것은 카드영수증도 세금계산서와 같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아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서에 세금계산서, 농어민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므로 신용카드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더라도 해당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여 발급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문의

Q A : 분양권계약일 2016.10
분양권등기일 2019.02
B : 분양권계약일 2019.02
분양권등기일 2021.11(예정)
1. A주택 지역은 조정일자로 지정된 날짜가 2020년 11월 20일
2. B주택 지역은 조정일자로 지정된 날짜가 2020년 6월 19일
3. A주택은 현재 2년 보유,거주 동시에 만족합니다.
이럴 경우, A주택을 처분하고, B주택을 취득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몇 년안에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A 새로운 주택 계약시점에 종전주택이 조정지역이 되기 전이었으나 신규주택(B주택)의 취득시점에 조정지역으로 변경된 경우는 종전주택인 A주택을 3년내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부동산 양도관련 등은 취득시기, 양도시기, 상황, 거래조건에 따라 매우 민감하므로 국세청에 문의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타업체를 통해 상품권 구입 시 부가세 과세여부

Q 일반적으로 상품권을 구입시에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아 부가세 과세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품권을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닌 법인인 A업체가 우리회사를 대신해서 상품권을 구입하고 우리가 A업체에게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우리회사와 A업체간에는 세금계산서(부가세 과세)를 발급해야 하나요?

A 상품권은 회폐대용증권으로 재화나 용역이 아니므로, 상품권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의 변경

Q 당사는 법인이고 현재 시설(기계장치)투자 진행 중 계획이 변경되어 타 계열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A라는 회사와 시설계약 후 계약금 세금계산서가 3월발행되어 지급완료 되었고, 중도금부터 타 계열사에서 변경계약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1) 기존 발행되었던 세금계산서는 '계약의 해지'사유로 계약변경(해지)일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문제소지가 있나요?(계약금이 지급된 상태에서 계약의 해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도 추가 질의 드립니다.)

2) 변경계약서 작성 후 취소된 계약금 반환은 타 계열사에서 당사로 직접 반환해줄 계획입니다.

변경계약서 상에 반환의무를 기재, 작성하면 기존 A라는 회사에서 당사로 반환하지 않고 타계열사에서 바로 당사로 입금했을때 문제소지가 있나요?

(계약거래한 A라는 회사는 개인사업자인데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계약금을 당사로 직접 반환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A 1. 실질적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금의 지급여부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계약금이 지급되었다고 해도 실제 계약이 해지 되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가급적 계약금을 원래 지급자인 귀사에게 반환하는 것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대물변제 받은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보다 큰 경우 채권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상담실 백종훈 차장

거래처의 부도나 기타의 상황에 의하여 외상매출금이나 받을어음 또는 대여금 등의 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현금회수가 어려운 경우 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을 유입 취득하거나 토지·건물·기타 자산 등으로 대물변제받기도 한다.

매출채권 등을 대물로 변제받는 경우 매출채권 등의 가액과 변제받는 자산의 가액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채권액과 대물변제로 인하여 취득되는 자산 가액의 차이에 따른 세무회계처리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물론 매출채권 등을 현금이 아닌 대물로 변제받은 경우 유입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정상가액, 즉 시가로 반영하여야 한다.

대물변제로 받은 고정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대물변제로 받은 자산의 시가금액이 채권액보다 더 큰 경우,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채권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채무자에게 되돌려 주기로 한 경우에는 대물변제로 받은 고정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외상매출금 등과 상계처리하고 차액은 반환하는 처리를 하면 된다.

그러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채권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수수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 차액에 대해 법인세법에서는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액을 동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액을 대물변제로 받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매출채권 등과 상계처리하면 된다.

차) 고정자산	800	대) 외상매출금(전액)	800
---------	-----	--------------	-----

♣ 서면2팀-1468, 2006.08.02

귀 질의의 경우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그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액을 동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아울러 대물변제 받은 자산의 시가는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그 시가가 불분명

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대물변제 받은 고정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한 경우의 미회수 금액의 처리

자산 등으로 대물변제 받았음에도 대물변제 받은 자산의 가액이 채권액에 미달되어 채권의 가액이 남아 있는 경우, 남은 채권 잔액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대손처리하거나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반영하여 처리하면 된다.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액보다 미달하는 고정자산을 변제받으면서 채권액이 청산된 것으로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동 고정자산의 시가와 채권액과의 차액은 사후약정에 의하여 채권액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해당 미회수액에 대해 접대비로 처리하여 시부인한다.

차) 고정자산	500	대) 매출채권	800
접 대비	300		

매출채권이 아닌 기타의 채권의 경우로서 미달되는 자산을 변제받으면서 채권액이 청산된 것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동 차액에 대해 손금불인정하는 비지정기부금으로 간주하여 세무상 손금부인 계산한다

차) 고정자산	500	대) 기타채권	800
기부금	300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액보다 미달하는 고정자산을 변제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부도도산 등으로 나머지 채권 잔액을 회수할 수 없는 등 대손사유에 해당되는 시점에 대손처리를 하면 된다.

① 외상채권 중 일부 대물변제 받은 시점			
차) 고정자산	500	대) 매출채권	500
② 대손처리 요건 충족되는 시점			
차) 대손충당금	300	대) 매출채권	300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세법

법인세 최고세율 추이

구분	2000년	2009년	2017년	2021년	비교
한국	28.0%	22.0%	22.0%	25.0%	높임
미국	35.0%	35.0%	35.0%	21.0%	낮춤
일본	30.0%	30.0%	23.4%	23.2%	낮춤
영국	30.0%	28.0%	19.0%	19.0%	낮춤
독일	42.2%	15.8%	15.8%	15.8%	낮춤
프랑스	37.8%	34.4%	44.4%	28.4%	낮춤

화

장수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조건

	내용
상속세 부담 완화	최고 50% 상속세율 → 25% 인하
	연부연납 기한 5년 → 10년
기업상속공제 제도 개선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3000억 미만 → 1조원 미만 중견기업
	공제한도 최대 500억원 → 1000억원
	사후관리요건 중 고용 유지 요건 완화 및 업종 변경 허용



일시적 2주택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	155조 16항
<p>종전 주택 취득 1년 후 신규 주택 취득 시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1주택 기준으로 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주택 취득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1호) -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을 경우 1년 이내 처분·전입(2호) 	<p>수도권 소재 법인이나 기관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 종사자가 이전 지역에 주택을 취득할 때는 1항 중 3년을 5년으로 봄</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현황

- 가입자격
만 19세 이상 거주자, 소득여부 무관
- 납입한도
연간 2000만원, 이월적립 가능
- 만기
3년
- 편입상품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적금, 상장지수펀드(ETF), 추가연계증권(ELS), 상장주식
- 세제혜택
계좌 내 상품에 대해 기간간 손익통산 후 수익금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꿈을 현실로 만드는 7가지 포인트

1. 목표 실현의 에너지를 만들라!

잠재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면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로 거듭난다.

2. 비상식의 혁명을 선포하라!

'비상식'은 상식 밖의 상식을 제공한다. 그 비상식의 상식을 깨달았을 때 셀프 임파워먼트가 시작된다.

3. 나답게 사는 법을 배워라!

셀프 임파워먼트란 스스로 무한한 파워를 끌어내 자신을 활기차게 하는 일이다.

4. 고정된 항로를 이탈하라!

자신을 고정된 틀 속에 가두어두면 자신을 무능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인생마저 한낱 휴지 조각으로 구겨버리게 된다.

5. 자신의 한계점을 넘어라!

고달픈 일상에 젖어 안주하는 사람은 평생토록 노력해도 한 평 남짓한 주검의 공간밖에는 성취할 수 없다.

6. 자신의 열정적인 팬이 되어라!

세상 어디에도 자신만큼 가장 열렬한 지원자는 없다.

7. 내 안의 나를 일깨워라!

꿈을 이루고,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하고 싶은 자화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셀프 임파워먼트라는 토양에 끊임없이 노력이라는 비료를 주어야 한다.

최신 판례 예규

Marketing Tax consulting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라도 각 지점에서 분양업무 총괄하는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는 지점 명의로 발급함이 원칙임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이 근린생활시설등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발급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1217, 2021.01.22

질 의

- 신청법인(신탁재산의 "위탁자")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로 ▲▲ 근린생활시설 등'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 신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시 **동 소재의 토지(이하 "본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20.9월 (주)○○토지신탁(수탁자), ▲▲건설(주)(시공자) 등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 신탁의 목적은 본건 사업부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이하 "건물")을 신축하고,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관리·분양하는데 있으며, 본건 사업을 수행할 예정으로 수탁자에게 신탁함
- 신청법인은 신탁계약 체결 이후 공사관리 및 분양관리 등 업무를 지점을 통해 진행할 예정으로 '20.10월 지점(이하 "△△지점")을 설치하였고, △△지점은 독립적인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 건물을 공급함에 있어 ○○토지신탁을 수탁자 겸 매도인, ▲▲건설(주)를 시공자, 자신을 위탁자로 하여 '20.12월 수분양자와 공급계약을 본점명의로(본점 주소표기)로 체결하고
 - 분양분 매출에 대해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예정임

질 의요지

- 본점과 지점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에서 근린생활시설등을 공급하는 경우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사업에 관한 총괄업무를 지점에서 수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자본거래-4342, 2021.02.03

질 의

-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고 다른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에게 배정된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증여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서면법령부가-4909, 2021.03.02

질 의

- 제조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이 제품의 제조를 제조업체에게 위탁하여 제조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제조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이 제조업체에게 제품의 제조를 위탁하여 제조한 제품의 제조원이 제조업체로 표기되고, 제품에 대한 하자 및 품질보증을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등 그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령법인-2114, 2021.03.08

질 의

- (질의1) 비영리법인이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령한 기부금에 대해 법인세 과세되는지 여부
- (질의2) 비영리법인이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령한 기부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에 대해 법인세 과세되는지 여부

회 신

질의1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법인세과-1143,2010.12.07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2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51, 2016.02.17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영리내국법인인 학교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상속세제 개편' 정부 임기내 이뤄지나... 정부 내달 검토 착수키로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작업이 끝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명목세율 기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는 소득세 최고세율(42%)을 10%포인트 가까이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물려줄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일반 주식보다 가액을 20% 높게 평가한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상속세 납부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현재 상속세 납부자는 극소수에 그치며, 이들이 각종 공제를 받아 실제로 부담하는 세율은 명목세율보다 훨씬 낮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국세청의 국세 통계 수시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중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된 고인(피상속인)은 전체의 3.3% 정도인 1만181명이었다. 납부 대상이 되더라도 일괄 공제(5억원)와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 등 혜택을 고려하면 통상적으로 10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 공제 등 기타 인적공제액을 더한 액수가 5억원보다 크면 일괄공제 대신 이 금액을 적용해 10억원 이상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또 중소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때는 최대 500억원까지,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15억원까지 추가 공제 혜택을 준다.

이처럼 양쪽의 의견이 팽팽한 만큼 단기간에 간극을 좁히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최근 유산취득세나 자본이득세 등 새로운 과세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논의가 더욱 복잡해졌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상속 재산이 아닌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매기는 세금인데,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세 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함께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유산취득세 도입 논의는 현 정부보다 다음 정부의 과제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상위 1% 배당소득' 투자자 7명 중 1명은 근로소득도 상위 1%에 속함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국세청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배당소득 상위 1% 고소득자는 9만7천19명이며, 이중 근로소득도 상위 1%인 사람은 1만3천987명(14.4%)이었다.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상위 1%인 납세자의 평균 배당소득은 1억5천800만원, 평균 근로소득은 2억5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배당·근로소득을 합치면 4억1천만원 수준이다.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상위 1%인 납세자 수는 10년 전인 2009년(1만1천492명)보다 21.7% 증가했다. 이 그룹의 배당·근로소득 합계액도 2억3천900만원에서 71.5% 늘었다.

임대소득의 경우, 2019년 상위 1% 소득을 올린 1만2천623명 가운데 1천728명(13.7%)이 근로소득으로도 상위 1%에 속했다.

이들이 거둔 평균 임대소득은 2억8천700만원, 평균 근로소득은 2억5천300만원으로 합계 소득이 5억4천만원에 달했다.

용 의원은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이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고액 연봉자가 근로소득을 모아 주식·부동산을 사들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상위 10%로 범위를 넓혀 보면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상위 10%인 납세자는 2019년 기준 18만3천174명이고, 이들의 평균 배당소득은 2천100만원, 평균 근로소득은 1억200만원이었다.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상위 10%인 납세자는 1만7천262명이고, 이들의 평균 임대소득은 8천400만원, 평균 근로소득은 1억200만원이었다.

용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와 자산시장 호황으로 K자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던 지난해에는 근로소득과 재산소득 양쪽에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했을 것"이라며 기본소득을 재분배의 기본 틀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국세청, 2021. 10

세정지원 대상

- 2020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또는 전문인적용 역제공 법인(개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 * 2020과세연도(‘20년 1~12월 중 과세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 2022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21년 대비 2%·3%(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법인 및 개인 사업자)
 - * 상시근로자 수 =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기준비율)

2020과세연도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 1,500억원 미만
일자리창출 비율	2% 이상	3% 이상

세정지원 내용

- 2020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제출방법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전송
 - * 홈택스 로그인(사업자ID 또는 공인인증서)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증가인원수, 증가비용 등이 자동계산 되며,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화면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서식에 수록된 결과를 조회 및 출력 가능

- (서면)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 제출기한 : 2021. 11. 30.(화)

'상시근로자 수'란?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일부 준용

-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 ② 단시간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 근로자 1명을 0.5명으로 계산
- ③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④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 ⑤ 위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 ⑥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국민연금 부담금 및 기여금(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 ⑦ 상시근로자의 월평균급여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시한 '최저임금(시간급)'에 기준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월환산액* 미만인 근로자
* '21년 최저임금(8,720원) × 월환산액 기준시간수(209시간) = 1,822,480원
'22년 최저임금(9,160원) × 월환산액 기준시간수(209시간) = 1,914,440원

- '22년에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가중치(1명 → 2명) 부여(기타 우대와 중복적용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일부 준용

(청년) 15세 이상 ~ 34세 이하 + 군 복무기간(최대 6년)

(고령자) 65세 이상, (장애인)「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등

- '22년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수가 '21년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신규 채용한 것으로 보며,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수'(서식 「③ 증가인원 수」)를 한도로 함

- 신청일 현재 청년창업중소기업*인 경우 청년근로자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 계

산방법에 따라 증가된 고용인원 1명을 2명으로 계산(기타 우대와 중복적용하지 않음)

* '16.1.1.이후 창업한(법인은 설립등기일, 개인은 개업일) 사업자로,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기간 제외 최대 6년 한도)인 경우(법인은 대표자가 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

- 신청일 현재 강소기업*(청년친화 강소기업 포함)인 경우 청년근로자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따라 증가된 고용인원 1명을 2명으로 계산(기타 우대와 중복적용하지 않음)

* 고용유지율과 신용평가 등급이 높고, 최근 3년 이내 산재사망 발생이 없는 기업 등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우수한 중소기업(법인은 본점, 개인은 2020귀속 주사업장 기준)

-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 기업*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우대 제외

*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체불총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기업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 우대 제외

계산방법 예시

● 2021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202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말 근로자 수 (청년·고령자 ·장애인 근로자 수)	98 (34)	98 (34)	98 (34)	98 (34)	98 (34)	98 (34)	97 (34)	97 (34)	100 (37)	102 (38)	100 (37)	100 (36)

• 2021년 평균 상시근로자 수 : 98.7명(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frac{98 + 98 + 98 + 98 + 98 + 98 + 97 + 97 + 100 + 102 + 100 + 100}{12} = 98.7\text{명}$$

• 2021년 평균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수 : 35명(계획서에 기재할 청년 등 근로자 수)

$$\frac{34 + 34 + 34 + 34 + 34 + 34 + 34 + 34 + 37 + 38 + 37 + 36}{12} = 35\text{명}$$

● 2022년 상시근로자 수(계획) 계산 방법

◆ 2022년 근로자 수 변동 사례

- '22.2월 상시근로자 2명 신규채용(청년근로자 1명 포함)
- '22.4월 생산라인 증설로 8명(청년근로자 아님) 신규채용
- '22.9월 정년퇴직으로 5명 감소(예상)

202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말 근로자 수	100	102	102	110	110	110	110	110	105	105	105	105
(청년·고령자 ·장애인 근로자 수)	(36)	(37)	(37)	(37)	(37)	(37)	(37)	(37)	(37)	(37)	(37)	(37)

• 2022 평균 상시근로자 수 : 106.2명 (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frac{100 + 102 + 102 + 110 + 110 + 110 + 110 + 110 + 105 + 105 + 105 + 105}{12} = 106.2\text{명}$$

• 2022 평균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수 : 36.9명 (계획서에 기재할 청년 등 근로자 수)

$$\frac{36 + 37 + 37 + 37 + 37 + 37 + 37 + 37 + 37 + 37 + 37 + 37}{12} = 36.9\text{명}$$

● 증가인원 수 : 7.5명 (106.2명-98.7명)

● 증가비율 : (9.4명 / 98.7명) × 100 = 9.5%

○ 9.4명 =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106.2 - 98.7 = 7.5명)

+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가중치 ((36.9-35)* × 1 = 1.9명)

* 청년 등 근로자 가중치는 증가비율 계산 시 적용하며, 가중치를 적용하는 청년 등 근로자 증가인원은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을 한도로 함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 증가인원 수 : 7.5명 (106.2명-98.7명)

● 증가비율 : (15명 / 98.7명) × 100 = 15.1%

○ 15명 =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106.2 - 98.7 = 7.5명) * 2

<청년친화 강소기업의 경우>

● 증가인원 수 : 7.5명 (106.2명-98.7명)

- 증가비율 : $(15명 / 98.7명) \times 100 = 15.1\%$
 - 15명 =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106.2 - 98.7 = 7.5명$) * 2

기타 참고사항

- 1~11월 중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2021년 대비 2022년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
 - * 예시) 2021년 6월말 법인의 경우 2021년(1~12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대비 2022년(1~12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증가비율로 계산
- 일자리창출계획서 서식 2번 ①·②·④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 예시) 1.46명 → 1.5명
- 일자리창출계획서 서식 2번 ⑤ 최종 증가비율 계산에서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절사함에 유의
 - * 예시) ⑤ 최종 증가비율 1.98% → 1.9%
- 매월말로 퇴직하는 근로자는 매월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매월 말일이 아닌 경우는 제외)
 - * 예시) 3.31일자 퇴직 근로자는 3월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합병·분할법인등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 합병법인
 -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 '21.5월 합병법인의 합병 전·후 매월 말 근로자 수

202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병법인	60	60	60	60	100	100	100	120	120	120	120	110
피합병법인	40	40	40	40	-	-	-	-	-	-	-	-

202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병법인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 2021년 (기준)상시근로자 수 계산 : 67.5명

$$\frac{60 + 60 + 60 + 60 + 60 + 60 + 60 + 80 + 80 + 80 + 80 + 70}{12} = 67.5명$$

* 5월말 근로자 100명 중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40명 차감하여 계산

- 2022년 합병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 70명

$$\frac{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12} = 70\text{명}$$

*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40명 차감하여 계산

- 증가인원 수 : 70명 - 67.5명 = 2.5명
- 증가비율 : (2.5명 / 67.5명) × 100 = 3.7%

● 분할법인

- 분할의 경우 분할 후 존속하는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 '21.5월 분할법인의 분할 전·후 매월 말 근로자 수

202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할존속법인 (제조부문)	100	100	100	100	60	60	60	80	80	80	80	70
분할신설법인 (판매부문)	-	-	-	-	40	40	40	40	40	40	40	40

* '21.5월 분할된 법인의 분할 전 상시근로자 수를 제조관련 사업부문 60명, 판매관련 사업부문 40명으로 가정(청년 등 근로자 수 증가인원 없음)

202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할존속법인 (제조부문)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 2021년 (기준)상시근로자 수 계산 : 67.5명

$$\frac{60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80 + 80 + 80 + 80 + 70}{12} = 67.5\text{명}$$

- 2022년 분할존속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 70명

$$\frac{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12} = 70\text{명}$$

- 증가인원 수 : 70명 - 67.5명 = 2.5명
- 증가비율 : (2.5명 / 67.5명) × 100 = 3.7%

참 고

일자리창출계획서(작성 예시)

일자리 창출 계획서

※ 해당되는 []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1. 신청인의 인적사항 (본점 기본사항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123-81-45678	법인명(상호)	(주)창출		
대표자	이국세	사업장 소재지	서울 종로구 종로5길 00		
업 종	제조 / 소화기	전화번호	02-123-4567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2020사업연도 신고수입금액	(55,000,000,000)원	중소기업여부	[여]	** 중소기업만 제출 가능 **	
		청년창업여부*	[부]	(청년친화)강소기업 여부**	[부]

* '16.1.1.이후 설립한 법인으로 설립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기간 제외, 최대 6년 한도)이면서 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서 최대주주(출자자)

** 신청일 현재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강소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법인은 본점 기준)

2. 2022년 근로자 고용 계획		
구 분	인 원	기 준
① 2021년 상시 근로자 수(기준)	98.7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12월(11월) 인원은 예상 인원으로 계산] ※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② 2022년 상시 근로자 수(계획)	106.2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에 고용 예정인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한 매월 말일 현재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③ 증가인원 수(②-①)	7.5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1명 이상
④ 청년·고령자· 장애인 근로자수	㉑ 2021년	35.0 명
	㉒ 2022년	36.9 명
	㉓ 증가(㉒-㉑)	1.9 명
⑤ 최종 증가비율 ([(㉓+㉑)/①]*100) 단, 청년창업기업과 (청년친화)강 소기업은 (③*2)/①*100	9.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은 2%, 수입금액 500억원~1,500억원 미만은 3%이상 이어야 함 ※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절사

※ 상시(청년·고령자·장애인)근로자 수 계산(외국인 근로자는 제외)

고용 연도	구분	해당 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청년·고령자·장애인)근로자 수												⑬ 합계	⑭ 개월 수	⑮ 근로자수 (=⑬÷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1	상시	98	98	98	98	98	98	97	97	100	102	100	100	1,184	12	98.7
	청년·고령자·장애인	34	34	34	34	34	34	34	34	37	38	37	36	420	12	35.0
2022	상시	100	102	102	110	110	110	110	110	105	105	105	105	1,274	12	106.2
	청년·고령자·장애인	36	37	37	37	37	37	37	37	37	37	37	37	443	12	36.9

3. 구체적인 고용 계획 및 사유 :

2022년도 중에 위와 같이 상시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임을 확인합니다.

2021년 1월 1일
신청인(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지정감사인의 감사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

- 금융감독원, 2021. 10

- ◇ 지정감사 관련 부당행위 발생 시 엄중 문책할 예정인 만큼 지정감사인은 법령 등 준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 지정감사인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부당행위 신고센터와 상담센터를 적극 활용하세요.

1 추진배경

- 회계개혁에 따른 주기적 지정제의 시행 이후 3년이 경과하면서 올해는 전체 상장사의 절반 수준이 감사인을 지정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 [감사인 지정 상장사(개, 비중 %)] ('17) 170/7.8% → ('18) 284/12.7% → ('19) 807/34.7% → ('20년) 1,060/44.5% → ('21e) 1,253/51.6%
- 감사인을 지정 받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업과 감사인간에 외부감사와 관련한 분쟁도 날로 증가하고 있어,
 - 기업과 감사인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분쟁 발생시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 지정감사인에 대한 감독강화 방안

〈 기본 방향 〉

- ◇ 감사인 지정을 받은 기업들이 정부와 유관기관의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체계화하여 적시에 공표
- ◇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부당행위 발생시 신속·엄중하게 제재



가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마련

- 그동안의 지정감사와 관련한 감독지침·가이드라인을 모두 망라한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발표('21.10.18)하고
 - 이를 감사인을 지정 받은 기업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여 기업들이 모범규준에 따라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모범규준 주요내용 >

- ① 감사인력·시간·보수 등 감사계약 관련 사항에 대한 지정감사인·회사간 협의 의무화 및 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감사팀 구성 의무화
- ②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자료 요구 및 제3자 검증 요구 등의 행위 제한
- ③ 지정감사인의 디지털포렌식(회계부정조사) 요구를 위한 요건 명문화
- ④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발생시 해소 절차 구체화
- ⑤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 금지 규제의 내용 명확화

나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강화 및 부당행위 신고센터 확대

- '19년부터 운영해 온 신고센터의 업무 범위를 지정감사서비스와 관련한 애로 전반으로 확대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절차의 신속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① (제재절차)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합리적인 사유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지정감사인에 대해서는 우선 감사인 지정을 취소하고,
 - 금감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지정제외점수 및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하겠습니다.
 - * (현행) 신고 → 자율조정 → 한공회 윤리위 징계 → 지정취소·지정제외점수 부과
 - (개선) 신고 → 자율조정 → 지정취소 → 협의체조사 → 지정제외점수 부과 및 징계부과
 - ② (센터 확대) 신고센터가 감사보수 뿐 아니라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에 따른 부당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 금감원·한공회가 신속히 조정·처리하겠습니다.
 - * 예) 감사계획·인력·보수·시간 등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자료 요구 또는 제3자 검증 요구 등
 - ** 신고센터명칭도 「감사보수 신고센터」에서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로 변경

※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상담센터

① 신고센터(금감원 ☎ 02-3145-7975/7761 / 한공회 ☎ 02-3149-0393)

- 금감원의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fss.or.kr)과 한공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 신고가 가능합니다.

② 상담센터(상장회사협의회 ☎ 02-2087-7190~4 / 코스닥협회 ☎ 02-368-4580~4)

- 상장협·코스닥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전·당기 감사인 의견 조정 활성화

- 전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전기감사인과 당기감사인의 의견이 다른 경우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율이 가능합니다.
 - 올해는 협의회 위원으로 회계기준원과 산업별 전문가(2인)가 추가되고 협의회 운영방법 등이 보다 구체화되어 공표되는 만큼 예년보다 의견조율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 표준감사시간의 법적 성격 명확화

- 표준감사시간의 법적 성격과 감사인 지정사유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발부하여 시장의 오인을 불식시키겠습니다.
 - (오해)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미달하면, 회계법인은 한공회의 징계를 받게되고 기업도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고 오인
 - (실제) 감사시간이 여타 기업, 전년도 감사시간 등에 비해 비합리적으로 과도하게 낮은 경우에만 불이익 조치 부과
- 아울러,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에도 표준감사시간 성격(가이드라인)을 명문화하겠습니다.



3 기대효과

- ① 모범기준의 제정·시행으로 기업과 지정감사인간 외부감사와 관련한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② 신고센터 확대와 제재강화로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가 예방되고 부당행위 발생시 기업들이 보다 손쉽게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③ 표준감사시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바로잡혀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감사시간이 정해질 것입니다.

4 향후계획

- 「지정감사인 업무 수행 모범 기준」은 행정지도 제정절차에 따라 11월 중 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협의회」는 12월말까지 운영준비를 마치고 내년 1월 1일부터 조정신청을 받습니다.
-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 및 상담센터는 10월 18일부터 부당행위 신고에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용어 설명 >

- (감사인) 공인회계사가 설립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으로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자
 - (지정감사)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와 외부감사의 공신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외감법 §11)
 - (주기적 지정제)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제도(외감법 §11②)
- * ①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회사로서 ②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이상이고, ③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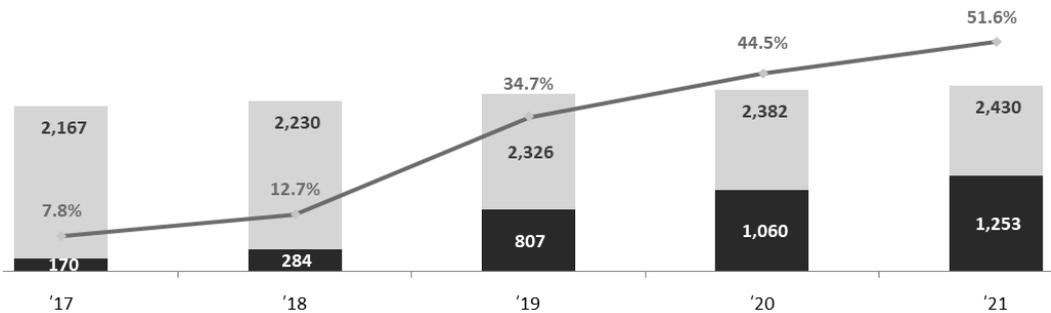
- (표준감사시간) 감사업무의 품질제고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표준 감사시간심의위원회)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한 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표준시간(외감법 §16의2)
 - * 회사 및 회계법인을 대표하는 위원 각 5명, 회계정보이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4명,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이 표준감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 (전기·당기)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를 말함

지정감사인의 감사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방안

1 추진 배경

- 감사인 지정제도가 대폭 확대된 지 3년이 경과되면서 '21년에는 전체 상장사의 절반 수준이 감사인을 지정받을 것으로 예상

〈 상장회사 지정감사 현황 〉



- 전체 외부감사 대상 상장사 / ■ 지정 감사 상장사 / ■ 지정감사 비율

- 지정감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감사 보수·시간·서비스품질 등에 대한 기업과 감사인간 분쟁이 해마다 증가



< 지정감사 업무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 >

- 자유선임시 활발히 진행되던 감사인과 회사간 외부감사 계약내용에 대한 협상·조정이 지정 감사시 원활하지 못함
- 감사투입시간, 감사보수 등에 대한 협의나 근거 자료 제시 요구에 미온적
- 감사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포괄적이고 비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3의 외부기관 자료 등을 요구하는 등 회사에 과도한 업무를 요구
- 기업이 직접 평가하거나 외부용역을 의뢰하여 추정한 공정가치를 외부감사인이 구체적 설명 없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 표명

○ 지난 2년간 감사보수 관련 갈등을 적극 중재*하였음에도 감사서비스 품질 등에 대한 기업의 애로는 여전한 상황

* ('19년) 12건 접수, 10건 조정 / 2건은 접수 후 자율조정
 ('20년) 7건 접수, 6건 조정 / 1건은 접수 후 자율조정

⇒ 확대된 감사인 지정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회사와 감사인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분쟁 발생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2 그동안 추진한 감독방안의 성과 및 한계

1] 감사 보수 집중 점검

○ (내용)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 감사계약 관련 분쟁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후 금감원·한공회가 감사보수 현황을 점검

<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사례 >

- 지정감사인이 감사중인 다른 회사와 달리 특정 회사에 대해서만 합리적 근거 없이 시간당 보수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 전년도도 동일하게 지정감사를 받은 회사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큰 폭의 감사보수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 감사보수 책정의 세부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감사시간과 시간당 감사보수를 수시로 변경하여 실제 감사보수는 동일하게 유지하는 경우 등

- 감사보수 신고센터(금감원·한공회)와 상담센터(상장협·코스닥협회)를 설치하여 기업들의 불만을 접수하고 감사인과 조정 실시

- 조정에 불응하는 감사인에 대해서는 한공회의 윤리위 징계를 거쳐 지정취소·감사인 지정 제외 점수 부과 등의 불이익 조치*

* '19-'20년 중 신고건은 대부분 사전조율을 통해 조정하여 한공회 징계 및 제재조치 사

례는 없음

- (한계) 시행시기, 분쟁조정범위, 낮은 불이익 조치 가능성 등으로 기업들의 활용도가 낮았던 측면
 - i) 계약실태 점검의 적시성 부족*으로 기업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측면
 - * '19년은 감사계약 체결 기한이 지난 12월 초부터, '20년은 본통지 시점인 11월 둘째주부터 감사계약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감사보수 신고센터를 운영
 - ii) 감사보수 외 서비스품질 등에 대한 분쟁은 대상에서 제외
 - iii) 부당한 감사보수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한공회의 징계를 선행요건으로 하여 기업들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② 전·당기 감사인 의견 조정

- (내용) 감사인 지정제 확대에 따른 빈번한 감사인 교체로 전·당기감사인간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전기 오류 수정 협의회」를 운영중('20.3월~)
 - * 전·당기 감사인간 분쟁 발생시 기초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아 감사의견을 받아야 하는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전기 오류 수정 협의회 운영 방식 〉

- 구성
(주관) 외부전문가 3인(한공회 감리총괄위원장·회계연구위원장, 회계학회장
(감사인) 전·당기감사인(담당 이사, 품질관리실장)
(회사) 경영진 및 감사(감사위원)
- (개최) 전·당기 감사인 품질관리실장간 협의 후, 회사가 협의회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 (협의회에 따른 조치 감경) 협의회에서 회계법인간 견해가 엇갈릴 수 있는 판단사항은 정상 참작사유로 보아 회계감리 조치 시 최소 1단계 감경

- 지난 2년간 35개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일정부분 경감

* '20년 22건(13개사), '21년 13건(11개사)의 전·당기 감사인간 분쟁을 조정

- (한계) 협의회에 대한 기업들의 낮은 인지도, 협의회의 산업 전문성 부족 등 보완 필요성 제기
 - i) 보도자료에 근거하여 협의회가 구성·운영됨에 따라 협의회 존재에 대한 기업의 낮은 인지도
 - ii) 협의회 개최 요건 및 운영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의 미비로 체계적인 운영이 어려움
 - iii) 협의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Pool이 제한적이어서 다양한 산업과 사례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가 곤란



3 2021년 지정감사 감독방안

〈 기본 방향 〉

- ◇ 감사인 지정을 받은 기업들이 정부와 유관기관의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체계화하여 적시에 공표
- ◇ 지정감사인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부당행위 발생시 신속·엄중하게 제재

가.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마련

- (현황) '19년부터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지침을 발표*하고 감사보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
 - * ① 표준감사시간 미준수 관련 가이드라인('19.2월) 및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20.1월)
 - * ②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19.12월)
 - ③ 전·당기감사인간 의견불일치 문제 완화를 위한 전기오류수정협의회 설치('20.1월)
 - ** (1차) '19.2월, (2차) '19.12월, (3차) '20.11월
- (문제점) 각종 감독지침이 보도자료에 산재되어 있고, 감사인 지정시점 보다 늦은 점검으로 기업들의 인지도·활용도가 낮은 측면
- (개선방안) 그동안의 감독지침·가이드라인·감사보수 관련 사항을 총 망라한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마련
 - 감사인 지정 예비통보 시점(10.14일)에 맞추어 발표(10.18일 예정)하고, 지정 대상 회사 등에 개별 안내하여 회사의 인지도 제고

〈 모범규준 주요내용 〉

- ① 감사인력·시간·보수 등 감사계약 관련 사항에 대한 지정감사인·회사간 협의 의무화 및 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감사팀 구성 의무화
- ②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자료 요구 및 제3자 검증 요구 등의 행위 제한
- ③ 지정감사인의 디지털포렌식(회계부정조사) 요구를 위한 요건 명문화
- ④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발생시 해소 절차 구체화
- ⑤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 금지 규제의 내용 명확화

나. 지정감사인의 권한 남용에 대한 감독 강화

- (현황) '19년부터 감사인 지정 후 감사계약 체결시(11월~12월)까지 감사보수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에 대한 조정 및 감독을 실시
- (문제점) 과도한 감사보수에 한하여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 후 제재절차도 한공회의 징계(윤리위)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기업들의 활용도가 저조
- (개선방안) 감사보수 외 지정감사서비스와 관련한 애로 전반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센터를 확대하고, 감사인에 대한 제재절차의 신속성과 중립성을 보완
 - ① (제재절차) 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 후 감사인이 합리적인 사유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 우선 감사인 지정을 취소하고,
 - 금감원·상장협·코스닥협회·한공회가 공동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지정제외점수 및 징계 부과
 - * (현행) 신고 → 자율조정 → 한공회 윤리위 징계 → 지정취소·지정제외점수 부과
(개선) 신고 → 자율조정 → 지정취소 → 협의체조사 → 지정제외점수 부과 및 징계부과(한공회)
 - ② (센터 확대) 감사보수 뿐 아니라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전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금감원·한공회가 신속히 조정·처리
 - * 예) 감사계획·인력·보수·시간 등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자료 요구 또는 제3자 검증 요구 등

다. 전·당기 감사인 의견 조정 활성화

- (현황) 지정감사인(당기)이 전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전기감사인과 의견이 다른 경우 한공회에 설치된 「전기 오류수정협의회」를 통해 의견 조율 가능
- (문제점) 협의회의 인지도, 운영의 체계성, 위원의 전문성 등에서 보완 필요
 - ① 협의회 명칭이 전기감사인의 오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전기감사인이 협의회 이용을 기피하는 측면
 - ② 협의회 위원이 3명에 불과하여 다양한 산업과 쟁점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가 제한
 - ③ 협의회가 보도자료에 의해 설치·운영됨에 따라 운영방식이 체계적이지 못해* 기업들의 활용이 제약
 - * 신청방법, 개최요건, 협의회 운영방식, 소요기간, 결과통보 방식 등에 대한 규정 미비
- (개선방안) 전·당기 감사인간 원활한 의견조정이 가능하도록 협의회 명칭 변경, 외부위원 확대, 운영방식의 체계화 등 추진



- ① 협의회 명칭을 「전기오류수정협의회」에서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협의회」로 변경
- ② 협의회 참여 외부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회계기준원 상임위원과 산업별 지정전문가(Pool 내) 참여를 의무화
 - * (현행) (3인) 한공회 감리총괄위원장 및 회계연구위원장, 회계학회장
 - (개선) (5인) 한공회 감리총괄위원장 및 회계연구위원장, 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산업별 회계전문가 2인(전체 전문가Pool에서 회사 산업군에 따라 산업별 지정 전문가를 회계학회장이 지명)
- ③ 협의회 운영 관련 사항(신청방법, 개최요건, 운영방식 등)을 규정화·발표하고 기업들에 개별 안내하여 기업들의 예측가능성과 활용도를 제고

라. 표준감사시간의 법적 성격 명확화

- (현황) 외부감사인의 저가수입경쟁을 완화하고 적절한 감사시간 확보를 위해 한공회가 표준감사시간을 제정('19.4월)하여 가이드라인으로 제공중
 -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감사계약 체결시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
- (문제점) 지정감사인이 개별회사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표준감사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빈발
 - 표준감사시간 미준수시 감사인은 한공회의 징계를 받게되며, 기업도 증선위에 감사인 지정 사유가 된다는 인식이 시장에 널리 전파된 상황
- (개선방안) 표준감사시간의 법적성격과 감사인 지정사유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발부하여 시장의 오인을 불식
 -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에도 감사투입시간 산정에 기초로 활용되는 표준감사시간의 성격을 명문화

< 유권해석 주요내용 >

- ❶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인이 회사에 필요한 감사투입시간을 결정하는데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평균적 감사시간으로서 적정수준의 감사시간을 산정하거나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역할
- ❷ 따라서 감사인이 이러한 표준감사시간을 활용하되 감사인의 판단 및 회사의 특성을 반영하고 그 근거를 적절히 문서화 했다면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 감사인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 ❸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기업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단순히 표준감사시간보다 감사시간이 낮다고 하여 해당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4 조치사항별 향후 계획

- '21년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일(10.14일)에 맞춰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기준 제정 등 관련 절차를 개시
 - 지정감사 업무수행 모범기준,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조정협의회 규정 등은 회사에 개별적으로 안내하여 활용도와 인지도를 제고

〈 각 조치사항별 추진 일정 〉

구분	추진사항	수행기관	추진일정
가. 모범기준 마련	모범기준 제정 및 시행 (행정지도)	금융위	10. 18일 모범기준(안) 발표 및 행정지도 예고(~10. 29일) → (11월 초) 행정지도심의위 → (11월 중) 모범기준 시행
나. 지정감사인 권한 남용 감독강화	계약실태 집중점검 및 감사보수 신고센터 운영	금감원 · 한공회	10. 18일 ~
	외부감사규정 개정 (과도한 감사보수 등 제재 관련)	금융위	'21. 12월 개정안 입법예고 → '22. 1분기 외감규정 개정
다. 전·당기 감사인 의견 조정 활성화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협의회 지침 제정	한공회	10. 18일 발표 → '21. 12월 중 지침 시행
라. 표준감사시간의 법적 의미 명확화	표준감사시간 유권해석 발부	금융위	'21. 10월 중 유권해석 발부

IFRS 실무서 '경영진설명서' 공개초안

- 한국회계기준원, 2021. 10

I 배경

가. IASB 프로젝트 요약

프로젝트 명칭	경영진설명서(Management Commentary)
프로젝트 목적	투자자와 채권자의 개선된 정보 요구에 대응하여, 기업의 장기적 전망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IFRS 실무서 1'을 대체하고자 함
프로젝트 단계	다음 제안 내용으로 공개초안(Exposure Draft)을 발표하여 외부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함 정보이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개선된 'IFRS 실무서 1'의 개정안
향후 일정	IASB는 공개초안에서 취합된 외부 의견을 고려한 뒤 이에 기초하여 IFRS 실무서 1을 개정할 계획임
공개초안 의견조회기간	'21. 5. 27. ~ '21. 11. 23.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조회기간: '21. 6. 11. ~ '21. 10. 15.)

나. 프로젝트 배경

- 기존 실무서('10년 발행)의 문제점들과 관련하여 투자자 및 채권자들의 정보개선 요구가 지속되어, 이에 대응하고자 '21.5.27일 공개초안(Exposure Draft)을 발표함
 - (기존 경영진설명서의 문제점) 기업 전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중요한(material) 정보 부족, 기업 특유 정보 부족 및 일반적 정보의 과다, 단기 문제에만 집중, 무형자산 및 관계에 대한 정보 부족, 재무보고서를 비롯한 다른 보고서와의 연계가 어려운 단편화된 정보, 낮은 비교가능성, 불완전하고 불균형된 정보 특성
- 본 개정을 통해 다음 특성을 지닌 요구사항 및 지침을 개발하고자 함
 - 기업가치 및 현금 창출 능력과 관련된 주요문제(key matter)에 대한 기업 특유 정보 및 경

- 영진 대응 공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충분한 유연성
- 외부 인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충분한 규율*
 - * 국가별 규제기관이 이를 의무화하고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II IASB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가. 경영진설명서 일반 요구사항(general requirements)

- 기존 실무서를 시작점으로 하되,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일부 절차상 요구사항을 개정하고 보다 명확하게 기술하였음
 - (경영진설명서의 식별) 경영진설명서를 단독 보고서 또는 다른 보고서의 부분 형태로 제공할 수 있으며, 다른 보고서 속 정보와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문단 2.1 참조)
 - (재무제표와의 관계) 경영진설명서에 관련 재무제표를 명시해야 함(문단 2.2 참조)
 - 단, 관련 재무제표가 반드시 IFRS를 따라야 할 필요는 없음
 - (준수하였다는 문구) 실무서의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경우엔 이를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술된 문구를 포함해야 하며, 만약 일부만을 준수할 경우엔 미준수 사유를 기술하여 제한적으로 기술된 문구를 포함할 수 있음(문단 2.5, 2.6 참조)
- 정보 이용자의 요구에 적합하도록, 경영진설명서의 목적을 좀 더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정보가 해당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기업이 판단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 하고자 함
 - (경영진설명서의 목적) 투자자와 채권자의 기업 재무성과 및 상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기업의 장기적 가치 및 현금창출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문단 3.1 참조)
 - 단, 경영진설명서 내에서 중요한(material) 정보란 경영진설명서와 관련 재무제표 모두를 기반으로 투자자 및 채권자가 의사결정 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를 의미함(문단 3.2 참조)
 - (재무제표 보완) 재무제표 속 정보를 보완하여 정보이용자가 기업의 재무성과 및 상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논의 및 분석 내용, 미래성과전망(forward-looking information) 및 비재무정보(non-financial information)를 제공(문단3.6 참조)

나. 공시 내용(cont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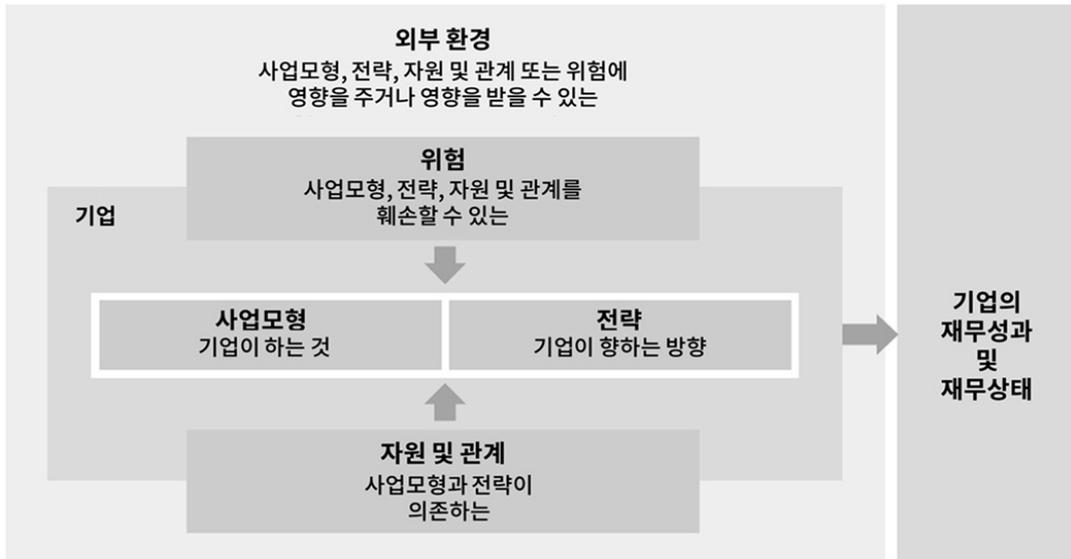
- (목적-기반 접근법) 기존 실무서는 경영진이 기술할 항목에 대한 광범위한 설명(broad description)을 포함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내용범주(areas of content) 별 명시적인 공시 목적 기술로 대체함
 - ① 경영진설명서의 공시목적(disclosure objective)을 명시(3-4장 참조)
 - ② 6개 내용범주 별로 공시목적이 충족되는지 명시*(5-10장 참조)

* 각 내용범주에 대한 공시목적은 해당 범주에 대한 투자자와 채권자의 전반적 정보 요구를 기술하는 표제 목적(headline objective), 제공된 정보에 대한 평가를 기술하는 평가 목적(assessment objectives), 그리고 투자자와 채권자의 상세 정보 요구를 기술하는 상세 목적(specific objectives)으로 구분되며, 공시정보가 각 공시목적에 충족하는지를 식별하기 위한 접근법은 문단4.4-4.5참조

- ③ 공시목적에 충족하기 위해 제공해야 할 정보의 예시를 제공(15장 참조)
- ④ 단, 반드시 따라야 하는 상세하고 규정된 목차를 제공하지는 않음

□ 6개의 내용범주*에 대한 정보 공시를 다음과 같이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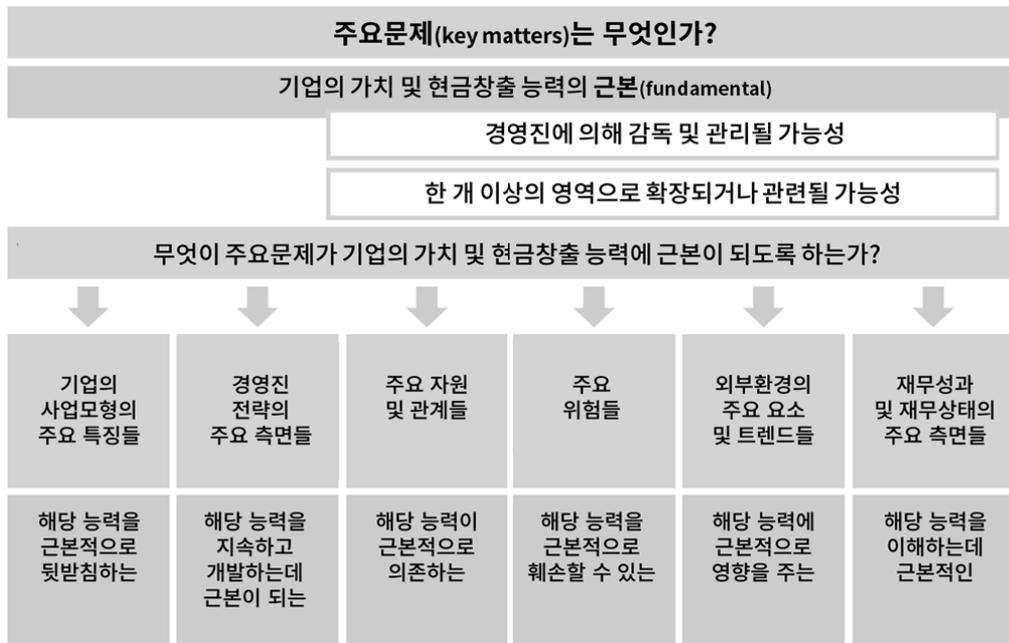
* 기존 실무서의 5개의 내용범주 ①사업 특성, ②경영 목적 및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한 전략들, ③기업의 가장 유의한 자원, 위험 및 관계들, ④운영의 결과 및 전망, ⑤기술된 목적에 대한 기업의 성과를 경영진이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critical) 성과 측정 및 지표



범주	범주별 중요한 정보
사업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사업모형이 가치 및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방법을 투자자와 채권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 사업모형의 효율성, 성장 잠재력, 탄력성, 적응성 및 내구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사업모형을 장단기 관점에서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한 전략 • 전략 요인, 장기 목표, 중간 이정표 및 관련 일정 • 전략의 잠재적 효과 및 가능성 평가를 위한 실행절차, 관련 자금 조달 계획
자원 및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사업모형 및 전략이 활용하는 주요 자원과 관계 • 자원의 가용성과 그 관계의 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정보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가치 및 현금흐름창출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주요 위험
외부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사업모형, 전략, 자원 및 관계, 그리고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외부 환경 요소 * 환경 요소: 산업 및 시장을 포함한 직접 환경과 법률, 규제, 경제적 환경, 정치적, 기술적, 사회적, 문화적, 자연적 환경을 포함한 광의의 환경을 포괄
재무성과 및 재무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장단기 경영 성과 및 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소 기업의 자본배분에 대한 정보와 자체적으로 판단한 미래지출의 분석, 유동성, 레버리지 측정치 및 지표에 대한 분석과 대응 전략

- (주요문제) 경영진설명서는 주요문제(Key matters)*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주요문제를 식별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문단 4.7-4.14, 12장 참조)
 - * 경영진의 중요성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정안에서 새롭게 도입된 개념
- 주요문제는 기업의 가치 및 현금창출 능력의 근본(fundamental), 기업 특유의 특성을 가지며, 내용범주 별로 본질적 중요성이 다름



- (지표) 경영진은 주요문제를 관리 및 감독하기 위해 지표들(metrics)을 사용하며, 각 내용범주 별 중요한 정보에는 지표가 포함될 수 있음



다. 지속가능성 보고(Sustainability reporting) 프로젝트와의 관계

- 개정된 실무서가 IASB 이외의 다른 기준제정 기구가 제시하는 ESG 관련 서술적 보고 (narrative reporting) 기준과 함께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함

라. 중요한 정보 선택 지침 및 정보의 특성

- 중요한 정보에는 주요문제 관련사항, 기업 경영에 있어 경영자가 활용한 정보, 또는 자본시장과의 의사소통에 포함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
 - 식별된 정보는 질적, 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중요성 판단을 거친 후 종합되어 보고됨(12장 참조)
- 공시목적에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다음 7가지 특성을 가져야 함(13장 참조)
 - 완전성(Completeness), 균형성(Balance), 정확성(Accuracy), 명확성 및 간결성(Clarity and conciseness),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검증가능성(Verifiability), 및 일관성(Coherence)
- 지표는 기업의 재무비재무 성과 및 상태의 양적·질적 특성을 감독하는 데 사용하는 방안을 지칭함(14장 참조)
 - 단, 지표에 대한 정보는 기업 및 산업 특유일 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실무서에서 별도의 지표 목록을 제공하지 않음

III

회계기준원의 예비적 검토의견

- IASB는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에게 경영진설명서 실무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조사연구실의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음

가. 경영진설명서 일반 요구사항(general requirements)

[질문1] 재무제표와 경영진설명서의 관계(문단 2.2)

- (a) IFRS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개정된 실무서를 준수하여 경영진설명서를 작성한 경우에 '실무서 준수'를 기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제안에 동의하는가?
- (b) 또한, 재무제표 작성기준에 대한 제한 없이 실무서 준수를 기술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제한조건이 필요한가?

[질문2] 준수(compliance) 문구(문단 2.5-6)

- (a) 경영진설명서가 실무서의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경우엔 이를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술된 문구를 포함해야 하며,
 - (b) 만약 일부만을 준수할 경우엔 미준수 사유를 기술하여 제한적으로 기술된 문구를 포함할 수 있음
- 위의 제안의 동의하는가?

<조사연구실 검토의견>

- 위 제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함
 - 다만, 재무제표가 IFRS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을 활용하여 작성되었을 경우, 정보이용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기업이 이를 명확히 명시하도록 좀 더 상세한 지침을 제공할 필요

[질문3] 경영진설명서의 목적(문단 3.1-2, 3.5-19)

경영진설명서는

- (a) 투자자와 채권자가 재무제표 속 해당 기업의 재무성과 및 상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
- (b) 기업이 가치 및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능력에 전 시간대에 걸쳐 (장기간 포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직관을 제공

위 경영진설명서의 목적에 동의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다른 목적이 필요한가?

<조사연구실 검토의견>

- 투자자와 채권자를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여 그들이 재무제표 속 과거 및 현재의 정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첫 번째 목적에는 동의하나,
 - 두 번째 목적에 기술된 '장기(long-term) 시간대'의 범주가 명확하지 않고, 전 시간대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범주 역시 다소 광범위해보임
 - 기존 경영진설명서의 핵심 문제로 지적된 boilerplate discussion 해소를 위해서는 공시목적의 좀 더 명확히 기술될 필요

나. 공시 내용(content)

[질문4] 전반적 접근법-목적기반(objective-based)

- (a) 경영진설명서의 목적을 명시(3장 참조)
- (b) 경영진설명서의 6가지 내용범주(areas of contents)를 명시하고, 각 내용범주에 대해 공시 목적이 충족되어야 함(5-10장 참조)
- (c) 공시목적 달성을 위해 경영진설명서가 제공해야하는 정보 예 제공(15장 참조)
- (d) 경영진설명서가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상세하고 규범적인 정보의 목록을 제공하지 않음
위의 접근법이 다음과 같으리라 예상되는가?
- (a) (운영 가능성) 경영진에게 투자자와 채권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식별하기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근거를 제공



(b) (집행 가능성) 감사인과 규제기관에게 기업이 실무서의 요구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결정할만한 적절하고 충분한 근거를 제공

<조사연구실 검토의견>

- 감사인과 규제기관이 기업의 실무서 요구사항 준수 여부를 결정할만한 적절하고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함
 - 좀 더 명확한 분류(taxonomy) 및 명시적 지침이 제공되지 않는 한, 집행 가능성 충족은 어려워 보임

[질문5] 공시목적 설계 (문단 4.3-5)

- (a) 제안된 공시목적 설계에 동의하는가?
- (b) 공시목적과 관련된 추가적 검토의견이 있는가?

<조사연구실 검토의견>

- 동의함

[질문6] 내용범주에 대한 공시목적(5-10장)

5-10장에서는 다음 6가지 범주에 대한 공시목적을 제안함

- (a) 기업의 사업모형
- (b) 사업모형을 지속 및 발전시키는 경영진의 전략
- (c) 기업의 자원과 관계
- (d) 기업이 노출된 위험
- (e) 기업의 외부 환경
- (f) 기업의 재무성과 및 상태

위 6가지 범주에 대한 정보에 대한 공시목적에 동의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대신 무엇을 제안하는가?

<조사연구실 검토의견>

- 기업에 노출된 위험뿐만 아니라, 동일 요소로 인한 '기회' 요인도 연계하여 공시하는 것에 대해 제언함
 - 사업모형 및 전략 등에서 해당 요인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으나, 위험과 기회가 연계되어 제공될 경우 정보 유용성이 제고되리라 기대됨

[질문7] 주요문제(key matters)

- (a) 경영진설명서가 주요문제에 초점을 맞추도록 요구해야한다는데 동의하는가?
- (b) 제안된 지침(guidance)이 경영진설명서가 초점을 맞춰야할 주요문제를 식별하는데 적절하고 충분한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되는가?
- (c) 제안된 지침에 대한 다른 제안이 있는가?

<조사연구실 검토의견>

- 'key'의 정의 및 개념, 그리고 다른 용어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 주요문제(key matters) 식별이 중요성 판단을 대체하지 않다는 것을 토대로 key가 단일의 기준점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는 동의함
 - 다만 결과적으로 matter의 속성을 결정함에 있어, 별도의 기준점을 보유한다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함

[질문8] 장기적 전망, 무형의 자원 및 관계, 그리고 ESG 문제
 (a) 공개초안에서 제안된 요구사항과 지침이 투자자와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i) 기업 장기적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ii) 무형의 자원 및 관계,
 (iii) 환경과 사회 문제
 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경영진이 식별함에 있어 적절하고 충분한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되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대안 또는 추가적 지침 및 요구사항이 필요한가?
 (b) 제안에 대해 다른 검토의견이 있는가?

<조사연구실 검토의견>

- 본 실무서 내에서 언급되는 ESG 문제에 대한 명시적이고 분명한 정의 또는 설명이 확인되지 않음
 - ESG 문제를 단순히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로 정의하기에는 ESG 관련 공시에 대한 방향성 및 관점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 실무서에서 요구하는 ESG 문제를 보다 명확히 정의할 필요
- 환경 및 사회 주제가 지속가능성 개념을 구현하는 상호 밀접한 관계의 핵심 요소인 것은 사실이나, 이를 실무적으로 동일 범주 상에서 다루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 개정된 실무서 속 주요문제의 특성, 개념 및 예제에 대한 기술이 국가별, 산업별 환경 및 사회 문제를 식별하고 이해하는데 적절한 도움을 주는지 다소 의문스러움
 - 내용범주 별 환경 또는 사회 예제를 제공하였는데, 환경과 사회 문제는 각각 개별 주제에 대한 예제를 제공할 필요
 - 한편, ESG 중 지배구조 사안은 분리하여 다루고 있는데, 환경과 사회문제는 왜 분리하여 다루지 않는지 일관성이 부족해보임

[질문9] IFRS재단 이사회의 지속가능성보고에 대한 프로젝트와의 관계
 재단이사회의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IASB가 실무서를 완성하는데 있어 고려해야할 사안이 있는가?



<조사연구실 검토의견>

- 지속가능성 정보는 정보이용자에게 기업과 관련된 미래 불확실성 및 위험을 체계적으로 검토 하는데 활용된다는 점에서, 경영진설명서의 목적과 밀접하게 연관
 - 다른 보고서 속 정보와의 상호 연관성 및 중복 정보 측면에서, 두 보고서가 어떤 관계일지에 대해 상세히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 정보의 선택 및 표시

[질문10] 중요성 판단(12장)

제안된 지침이 경영진이 중요한 정보를 식별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가? 또는 다른 검토의견이 있는가?

<조사연구실 검토의견>

- 일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됨

[질문11] 완전성, 균형, 정확성 그리고 기타 특성

아래의 제안들에 동의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다른 검토의견이 있는가?

- (a) 13장은 정보의 유용성 제고를 위해 경영진설명서 속 정보는 완전하고, 균형되며, 정확해야 함을 요구하며, 또한 경영진설명서가 요구되는 특성을 반영하도록 돕는 지침을 제공함
- (b) 문단13.19-21은 경영진설명서 속 정보가 기업이 발행한 다른 보고서 속 정보와 상호참조 (cross-reference)되어야 함을 논의함

<조사연구실 검토의견>

- 기본적으로 경영진설명서의 정보가 완전성, 균형, 정확성과 같은 특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는 관점에 동의하지 않음
 - 경영진설명서의 정보는 주로 서술 정보이기 때문에 재무보고 개념체계 하에서 요구되는 정보의 질적 특성을 갖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임

[질문12] 지표(Metrics)

경영진설명서에 포함된 지표에 적용할 요구사항에 대해 동의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대신 무엇을 제안하는가?

-요구사항-

명확성과 정확성(clarity and accuracy),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일관성(coherence)

<조사연구실 검토의견>

- 동의함

[질문13] 중요한 정보의 예

15장에서 제안된 예제들이 경영진이 경영진설명서 6가지 공시영역에 대한 공시목적에서 요구되

는 중요한 정보를 식별함에 있어 도움이 되리라 기대되는가? 그렇지 않다면, 대안 또는 추가적 예제는 무엇인가?

<조사연구실 검토의견>

- 일반적으로 도움이 되리라 예상됨

라. 기타 검토의견

[질문14] 시행일(effective date)

해당 실무서 발행일 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 연도부터 기존 IFRS 실무서('10년 발표)를 대체하는 것에 동의하는가? (즉, 실무서 발행일로부터 적어도 1년 후 종료되는 회계 연도부터 효력이 발생) 그렇지 않다면, 시행일은 언제가 되어야 하는가?

<조사연구실 검토의견>

- 동의함

[질문15] 효과 분석(effects analysis)

- (a) 예상 효과 분석(결론도출근거 BC139-177)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는가?
- (b) 기업이 실무서를 적용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국내 법안 또는 규제가 있는가?

<조사연구실 검토의견>

- 별도의 의견 없음

[질문16] 기타 검토의견

공개초안의 제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

<조사연구실 검토의견>

-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는 기업가치 이해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경영진의 내부 정보이나, 현재 제안된 실무서의 구성으로는 여전히 이러한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 기존 실무서에 따른 정보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주된 우려가 특별하지 않은 일반적 정보의 중복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이 이를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 지 확신하기 어려움
 - 이를 위한 구조적인 장치로서 예를 들어, 각 내용범주 별 공시목적에 대한 원칙 제공에 추가적으로 정량적 데이터(예, 특정 위험에 따른 현물흐름의 변동 예측치, 기업 자원의 가치 또는 가치평가 정보 등)의 포함을 고려하는 방안이 있음
- 기존 및 개정 실무서 모두 산업별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일 원칙만 제공하고 있는데, 정



보 유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산업별 실무서를 마련하는 방안이 있음

IV 의견제출기한 및 방법

- '21.10.15일까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기준원에 제출
 - 회계기준원은 수렴한 의견을 취합하여 회계기준원 이름으로 한국 의견을 제출

이메일	webmaster@kasb.or.kr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4층 한국회계기준원 우편번호 04513

- 또는, '21.11.23일까지 아래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IFRS재단에 바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음

전자적 방식 (선호 방식)	IASB 홈페이지 방문 → 'Comment on a proposal' page at: go.ifrs.org/comment
이메일	commentletters@ifrs.org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0월 15일 (금)	10월 18일 (월)	10월 19일 (화)	10월 20일 (수)	10월 21일 (목)
미 달 러 (USD)	1188.30	1182.80	1185.80	1181.70	1175.60
일 본 엔 (JPY)	1044.71	1034.59	1037.40	1032.73	1027.85
영 국 파 운 드 (GBP)	1625.24	1627.83	1628.04	1630.16	1625.15
캐 나 다 달 러 (CAD)	960.48	956.45	957.80	955.68	954.03
홍 콩 달 러 (HKD)	152.74	152.07	152.45	151.97	151.23
위 안 화 (CNH)	184.65	183.79	184.40	184.32	183.82
유 로 화 (EUR)	1378.19	1371.99	1376.77	1374.97	1369.87
호 주 달 러 (AUD)	881.60	878.41	878.74	883.32	883.87
싱 가 폴 달 러 (SGD)	881.14	877.29	878.86	878.55	875.19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86.06	284.46	284.26	283.28	282.49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분공시 위반 유형을 유의하세요

- 금융감독원, 2021. 10

◆ 지분공시는 투자자에게 상장사의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시로서, 올바른 공시를 유도하고, 투자자에게 투명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공시의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지분공시 위반 유형을 안내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대량보유자의 장외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에 따른 대량보유 보고 위반

(사례) 상장사 A社 최대주주 甲은 '21.9.2. 乙에게 보유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장외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량보유(변경) 보고는 미보고하고, '21.9.30. 동 계약에 따라 주식이 이전된 후 대량보유(변동) 보고만 하였음

- 상장사 주식등의 대량보유자가 보유 주식등*을 양도하는 내용의 장외 주식양수도 계약(발행주식등총수의 1% 이상)을 체결한 경우,
 - *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 이는 향후 지배권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계약*으로서 주식 이전 前이라도 '계약 체결일'에 대량보유(변경) 보고의무가 발생(단순투자목적 제외)하며,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함
 - * 담보계약, 신탁계약, 대차계약, 환매조건부계약 등 보유중인 주식등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계약을 의미
- ※ 기업공시서식 개정('21.9.1. 시행)을 통해 대량보유자의 '장외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이 대량보유(변경) 보고대상임을 명시하고, 관련 '기재상의 주의'도 보완하여 안내중임



2 CB콜옵션 계약 체결에 따른 대량보유 보고 위반

(사례) 상장사 A社の CB를 인수한 乙*은 보유중인 CB에 대하여 '21.9.2. A社 최대주주 甲에게 콜옵션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

* 동 CB를 포함하여 A社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한 대량보유자인 경우에 한함

- (CB 보유자 乙) 보유중인 주식등(CB)에 관한 주요계약을 체결한 것이나, 대량보유(변경) 보고는 미보고하고, 이후 '21.11.1. 甲의 콜옵션 행사에 따른 CB 매도 후 대량보유(변동) 보고만 하였음
- (최대주주 甲) CB콜옵션을 취득함에 따라 권리행사에 의하여 CB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를 보유하게 되었으나, 대량보유(변동) 보고를 미보고하고, 이후 '21.11.1. 콜옵션을 행사하여 CB를 취득한 후에야 대량보유(변동) 보고

● CB에 대한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이는 향후 지배권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계약'(발행주식등총수의 1% 이상)으로서 CB 보유자는 동 '계약 체결일'에 대량보유(변경) 보고의무가 발생(단순투자목적 제외)하고,
 - 동 계약을 통해 콜옵션을 취득한 자는 '계약 체결일'에 대량보유(신규·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하며, 모두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함
- ※ 기업공시서식 개정('21.9.1. 시행)을 통해 'CB콜옵션 계약 체결'이 대량보유 보고대상임을 명시하고, 관련 '기재상의 주의'도 보완하여 안내중임

3 민법상 조합의 대량보유 보고시 조합원 연명보고 누락

(사례) 민법상 조합인 'B'투자조합은 상장사 A社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8%)하고, 'B'투자조합 명의로 대량보유 보고를 하면서 조합원 甲, 乙, 丙을 특별관계자로서 연명보고하여야 함에도 누락하여 보고함

- 민법상 조합의 경우, 모든 조합원을 공동보유자로서 연명보고하여야 하며, 조합 명의로만 보고하는 것은 보고누락에 해당
 - 대표조합원을 대표보고자로서 보고시 기타 조합원은 특별관계자로서 연명보고하고, 조합을 대표보고자로서 보고시 전체 조합원을 특별관계자로 연명보고하여 보고 누락되는 조합원이 없도록 함
- ※ 기업공시서식 개정('20.7.6. 시행)을 통해 민법상 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보고방법을 안내중임

4 대량보유자의 담보계약 체결에 따른 대량보유 보고 위반

(사례) 상장사 A社 최대주주(35%) 甲은 '20.7.1. 본인의 채권자 乙에게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보유중인 A社 주식 중 일부(8%)를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계약기간 '20.7.1.~'21.7.1.)을 체결하였고, 대량보유(변경) 보고를 하였음. 이후 동 담보계약이 갱신되어 '22.7.1.까지 계약기간 연장되었으나 대량보유(변경) 보고를 미보고

- 대량보유자는 보유중인 주식등에 관하여 담보계약이 체결·변경된 경우 대량보유(변경) 보고 의무가 발생(단순투자목적 제외) 하며,
 - 기보고한 기존 담보계약이 계약기간 만료후 기존의 조건과 동일하게 갱신되었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의 변경이 있었는바, 이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량보유(변경) 보고를 하여야 함
 - 다른 조건은 동일하나 계약상대방이 변경된 경우에도 계약이 신규로 체결된 것으로서 대량보유(변경) 보고를 하여야 함
 - ※ 기업공시서식 개정('20.7.6. 시행)을 통해 대출금액, 이자율, 담보유지비용 등 담보권 실행에 따른 주식 이전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핵심정보를 공시사항으로 추가하였음

5 보고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오인하여 소유주식 보고 위반

(사례1) 상장사 A社 임원 甲은 본인이 보유중인 A社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보통주를 취득하였으나, 소유주식(변동) 보고 미보고

(사례2) 상장사 A社 임원 乙은 A社 무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취득하였으나, 소유주식(변동) 보고 미보고

- 보유중인 CB, BW 등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 무상증자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 면제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소유주식 보고의무는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됨
 - *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배정되는 신주 취득, 자본감소로 인한 보유비율 변동,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조정 등(자본시장법 시행령 §153⑤ 참조)
 - ** 다만, 주식배당, 무상신주 취득, 주식분할 또는 병합, 자본감소의 경우 보고기한 특례 적용(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변동보고)
 - ※ 지분공시 접수시 활용하는 'DART 편집기'를 통해 대량보유 보고 및 소유주식 보고 각각의 면제사유 및 차이점을 안내중임



6 보유비율의 계산오류 및 증빙서류 미비

(사례1) '20.8.7. 상장사 A社の 전환사채를 인수한 甲은 동 전환사채 인수를 사유로 한 대량보유 보고를 '21.9.2. 지연보고하면서 보고일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보유비율 계산

(사례2) 상장사 A社の 최대주주 甲은 주식 장내매수를 사유로 대량보유 보고를 하면서 보유비율 계산시 A社 발행주식총수에서 자사주, 우선주를 제외하고 계산

(사례3) 상장사 A社 최대주주 甲으로부터 동사 주식을 양수한 乙은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을 사유로 대량보유 보고를 하면서 증빙서류인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고, 이전 대량보유 보고서 첨부하였던 증빙서류를 그대로 첨부

- (보유비율의 계산오류)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서 보유비율은 보고서점이 아닌 보고의무 발생시점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고,
 - 발행주식총수에 자사주, 의결권 있는 우선주, 의결권이 부활된 무의결권 우선주를 포함하여 정확하게 계산하여 제출하여야 함
- (증빙서류 미비) 보고서유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거나, 임의로 일부만 발췌한 자료를 첨부하여서는 안되며,
 - 흐리게 인쇄되어 내용 식별이 어렵거나, 보고서유와 관련없는 자료를 첨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금융감독원은 지분공시 제도 및 주요 Q&A를 알기 쉽게 정리한 「기업공시 실무안내」 책자를 제공하고 있으며,
 - 동 내용은 'DART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dart.fss.or.kr) 하단 왼쪽 메뉴인 「기업공시제도일반」에서 확인 가능